

의안번호	2206306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5.1.7.
추계번호	24C58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38조(자립지원)	(제3항) 국가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38조의3(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각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8조(자립지원)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취업, 교육, 건강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2024년 예산 177억 2,100만원)
3	안 제38조의3(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퇴소 및 위탁종료 아동들의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립취약아동 맞춤형 자립지원(2024년 예산 2억 4,100만원)” 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2024년 예산 5억 7,800만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청년¹⁾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 또한 현행법은 해당 대상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만 3년마다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매월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실태조사 대상자 모집 및 설문조사의 자기기입식 응답 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연락두절 또는 응답거부 등인 자립준비청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복지제도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정보접근성이 낮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자립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안 제16조의2는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작성되어 추가재정소요 추계 시 필요한 정보, 즉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지원 수준, 기업 규모, 공공·민간기업의 구분, 자립준비청년 채용 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
 -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보호를 받은 청년으로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만기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 안 제38조의3에 따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²⁾을 지원받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발굴조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매월 발굴되는 자립준비청년 수, 발굴조사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세부적인 발굴조사 사항 등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함
 - 2017~2021년에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1만 2,256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중 약 20%가 연락두절인 상태로 나타났으나, 최근 시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23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발굴조사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정보가 부족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2024년 기준 월 50만원씩 지급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